

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
[] 양도·양수 [] 합병

접수번호	접수일자	발급일자	처리기간	10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-	-----

양도인 (합병 전)	상호(명칭)		
	성명(대표자)	주민등록번호	
	주소	전화번호	
	사업의 종류	등록일	
	사업장 소재지		

양수인 (합병 전)	상호(명칭)		
	성명(대표자)	주민등록번호	
	주소	전화번호	
	사업의 종류	등록일	
	사업장 소재지		

양도·양수 후 (합병 후)	상호(명칭)		
	성명(대표자)	주민등록번호	
	주소	전화번호	
	사업의 종류	등록일	
	사업장 소재지		

양도·양수 원인	[] 매매 [] 상속 [] 증여 [] 기타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55조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. 양도·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.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(양도·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	수수료
		12,000원